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9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72290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선고 2020구단7964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21.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9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의 경정거부처분 중 27,386,160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20.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의 경정거부처분 중 10,708,12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중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예상지출비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패소 부분 중 예상지출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가 불복하지 않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

1) 피고는 2023. 7. 7.자 준비서면에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판매비와 일반관리비(해당 취득세액 21,126,740원), 예상지출비(해당 취득세액 10,708,120원)] 중 예상지출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9

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6 내지 18면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고,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7행의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건축물'로 고친다.

○ 7면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에는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인 직접비용 및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간접비용이 포함되는데, 적극적으로 금원 등을 지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보유자산 등을 포기하는 방법을 통해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포기한 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8. 27. 자 2015두41616 판결의 원심판결인 대구고등법원 2015. 3. 27. 선고 2014누5256 판결 참조).」

○ 10면 3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대법원 2022. 9. 29. 자 2022두45944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누63497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쟁점 ③비용의 선례라고 주장하는 서울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20누57990 판결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사안, 즉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비가 문제된 것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9

으로서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비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와 쟁점을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 어렵다).」

○ 11면 17행부터 12면 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할 것이고,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참조),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8. 1. 25.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준공인가 이후 지출될 수 있는 비용을 10억 원으로 예상하여 이를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가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이후 일관되게 위와 같이 예상지출비 항목을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부과될 가산세를 대비하여 세무상 신고기법으로 과세표준에 가산한 항목이고, 실제 지출비용이 아닌 가상의 비용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신고 당시 첨부된 원가표에는 이 부분 예상지출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계산 항목에서도 원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9

표의 총금액에서 차감 항목이 공제된 다음 이 부분 예상지출비가 가산된 점, ③ 예상지출비가 실제 원고의 계정 등에서 관리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취득세 신고 당시 예상지출비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비용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2]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7681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체건축물에 대한 2017. 11. 29. 준공인가 이후에도 2019. 5. 7. 조합원총회가 개최되어 그 비용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용은 이 사건 과세대상 물건인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시기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13면 8행의 ④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조항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부과의 필요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학

2) 피고는 예상지출비가 이 사건 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부족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9

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또는 학교의 증축을 위해 비용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교육지원청과 C초등학교에 관하여 학교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비용에 관한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협약을 체결한 원인은 '원고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300가구 규모 이상의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분양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채납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부채납이 학교용지부담금과는 그 부담의 경위나 방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 및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책임져야 할 동일한 내용의 부담금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이 사건 기부채납은 학교용지부담금과 대체관계에 있다. 이는 이 사건 기부채납에 관한 협약(갑 제8호증)에서 '현금의 한도는 향후 관할 구청에서 각 조합으로 부과예정인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할 수 없고, 교육청에서는 각 조합에서 납부한 금액만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면제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정한 점에 비추어도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기부채납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직·간접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 13면 19행의 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⑤ 원고는 학교용지나 학교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학교 증축비용의 기부채납에 대해서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9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한 학교용지 등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과 그와 별개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격 산정에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의 기준을 정한 구 지방세법 제10조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와는 입법 취지와 근거 규정이 상이한 점, ㉡ 학교용지의 확보·공급과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역시 근거조항과 적용대상 등이 다르고,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에 불과할 뿐 과세대상인 '부동산 자체'라고 볼 수 없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공동주택에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어 사실상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는 점, ㉤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기존 학교의 증축이라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그 원인자인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데 도입 취지가 있으므로 그 성격상 간접비용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학교용지부담금이 학교용지법상 기부채납 또는 무상공급할 학교용지의 대체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였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었을 것인데, 학교용지부담금과 대체관계에 있는 이 사건 기부채납액을 부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9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9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9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9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가구(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9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끝.